

문자결합상표의 유사여부판단에 있어서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연구

[연재 일정 안내]

연 재	목 차
2006. 4월호	I 연구목적 II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 III 판례분석을 통해 본 분리관찰가능여부(요약)
2006. 5월호	IV 분리관찰가능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 ■ 상표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두 단어의 결합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06. 6월호	알기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두 단어가 저장상품의 일반수요자가 ■ 기타 분리관찰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V 결론

- 두 단어의 결합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두 단어의 결합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례1)

-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 SABREMAN STAMPEDE
- 선등록상표 : [그림 14]
- 관련판결요지(2005허7798)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단어들인 “SABREMAN”과 “STAMPEDE”가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로서 “SABREMAN” 부분과 “STAMPEDE” 부분 사이가 떨어져 있어서, 각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는, “크리스찬 디오르”나 “Bean Pole” 등의 유명상표가 결합된 상태 그대로 인식되고 호칭되듯이 이 사건 출원상표도 그와 같이 결합된 상태로 인식되고 호칭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두 부분으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요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반드시 두 부분이 결합된 상태로만



이 제 명 상표3심사팀장

현재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본부 상표3심사팀장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특허청 국제특허연수부 교육과장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

인식하고 호칭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출원 상표서비스표는 “SABREMAN” 부분과 “STAMPEDE” 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

사례2)

- 이 사건 등록상표 : OxyIR
- 인용상표서비스표 : oxy.co.kr
- 관련판결요지(2003후1949)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시각적으로 ‘Oxy’와 ‘IR’로 쉽게 분리되고 그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Oxy’와 인용상표서비스표의 구성 중 ‘oxy’는 일반수요자들이 그 부분에서 양 표장의 지정상품의 품질·원재료·효능·용도·형상을 직감할 수 없으므로 식별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인용상표서비스표는 그 구성 중 ‘.co.kr’에 식별력이 없으므로 ‘Oxy’가 요부인 바,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Oxy’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서비스표의 요부와 첫 글자의 대소문자 차이 외에는 동일하므로, 인용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하다.

사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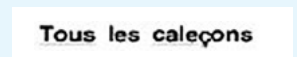
- 이 사건 출원상표 : TOUS
- 선등록상표 : [그림 15]
- 관련판결요지(2004허5849)

이 사건 출원상표는 “TOUS”와 같이 이루어진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 2는 “Tous les caleçons”와 같이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양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인 “TOUS”는 영어 식 발음에 따라 “투스” 또는 “토스”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외관상 3부분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전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



[그림 14]



[그림 15]

기 어려우며, 특히 영어식 발음에만 익숙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그 발음이 쉽지 않은 데다가 오늘날의 상품거래에 있어서는 긴 호칭을 보다 간략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선등록상표는 앞부분의 “Tous” 부분만으로 분리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로마자는 일반적으로 영어의 음운법칙에 따라 발음하려는 경향에 따라 선등록상표는 “토우스” 또는 “토스”와 같이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하다. 사례4)

- 이 사건 등록상표 : 정은Sky빌
- 선등록서비스표 : [그림 16]
- 관련판결요지(2005허100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정은’ 이란 한글자, ‘Sky’ 라는 영문자 그리고 ‘빌’ 이란 한글자가 교대로 결합된 문자 서비스표로서, 시각상 각 부분이 구분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세부분으로 분리관찰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두 단어의 결합이 시각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례1)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그림 17]
- 선등록서비스표 : [그림 18]
- 관련판결요지(2005허5594)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림 17]와 같이 영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서비스표인 바, 영문자 8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그 한글 음역도 일반 수요자의 영어식 발음경향에 따라 “로지테크”, “로지텍” 등으로 3, 4음절에 불과한 점, 일반수요자들의 언어습관상 짧고 간단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굳이 “로지”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

는 [그림 18]과 같이 한글 “로지넷”과 영문자 “LOGI-NET”가 상하로 결합된 문자서비스표인 바, 비록 영문자 부분이 “-”으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글 부분이 “로지넷”과 같이 짧은 3음절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를 일반수요자들은 한글 부분에 따라 “로지넷”으로 호칭할 것이고, “로지”만으로 약칭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양 서비스표는 외관, 관념은 비유사하나 호칭면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로지테크”, “로지텍” 등으로, 선등록서비스표는 한글부분에 의하여 “로지넷”으로, 각각 호칭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로지텍”으로 호칭될 경우와 선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인 “로지넷”을 비교하면, 앞부분의 두 음절과 세째 음절의 중성이 동일하고, 단지 세째 음절의 초성과 중성이 상이한 뿐인데, 통상 세음절로 이루어진 경우 첫째, 둘째 음절이 강하게 발음되고 마지막 세째 음절은 비교적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에 비추어, 세째 음절의 초성도 약하게 발음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서비스표의 세째 음절의 중성이 모두 짧게 끊어지는 발음이어서, 마지막 음절의 발음이 그 청감상 뚜렷이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워,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하다 할 것이다.

사례2)

○ 이 사건 서비스표 : NAWOO TECH LTD.

○ 선등록서비스표 : [그림 19]

○ 관련판결요지(2005허5884)

이 사건 서비스표 중 뒷부분의 ‘LTD.’는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는 나머지 부분(‘NOW TECH’)에 의하여 ‘나우테크’로 호칭되거나 그 약칭인 ‘나우’로 호칭될 것이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은 양자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선등록서비스표는 문



[그림 19]

자부분(‘NOWCOM’ 또는 ‘나우콤’)만에 의하여 호칭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문자부분의 각 문자들이 외관상 띄어쓰기 없이 연결되어 있고, 발음시의 전체 음절수도 3음절에 불과하여 이를 분리하여 호칭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나우콤’으로 호칭될 것이다(영문자 부분의 호칭은 ‘나우콤’, ‘노우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옆에 있는 한글부분에 의하여 ‘나우콤’으로 불릴 것이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 중 ‘NOW’ 또는 ‘나우’는 ‘지금, 현재’ 등의 의미가 있는 쉬운 단어이고, ‘COM’ 또는 ‘콤’은 ‘computer’의 약자 또는 인터넷 주소상의 최상위 도메인네임인 ‘.COM(닷컴)’의 의미로 사용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여 발음상 3음절에 불과한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부분을 분리하여 ‘나우’만으로 호칭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례3)

- 이 사건 출원상표: [그림 20]
- 인용상표: [그림 21]
- 관련판결요지(2004허7210)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알파벳 영문자 7개가 특별한 의미없이 연속적으로 배열된 문자상표로서 그 중 “UBI” 또는 “QMAN” 부분이 각각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영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 일반수요자들로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일부분인 “QMAN”만을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MAN”이 아주 쉬운 영어단어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MAN” 부분과 나머지 “UBIQ”로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은 있다할 것이다.}



[그림 20]



[그림 21]

■ 두 단어의 결합이 모두 동종의 상품에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인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례1)

- 이 사건 출원상표 : Style Manager
- 선등록 상표 : OIL MANAGER
- 관련판결요지(2004허1335)

소외 라미화장품주식회사가 권리자인 “피부매니저”라는 상표가 ‘나리싱 크림, 스킨밀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99. 10. 1. 출원되어 2000. 10. 20. 등록된 사실, 원고가 권리자인 “Water Manager”라는 상표가 ‘스킨밀크, 나리싱 크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2. 4. 8. 출원되어 2003. 10. 21.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Manager”라는 표장이 화장품류 제품에 관하여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상실되었다거나 “Manager”라는 단어와 결합된 상표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가 각 분리 관찰되어 “MANAGER”만에 의하여 “매니저”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위 두 상표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사례2)

- 이 사건 등록상표 : 정은Sky빌
- 선등록서비스표 : [그림 2]
- 관련판결요지(2005허1004)

양 서비스표의 ‘Sky’ 부분은 ‘하늘, 천국’ 등의 의미를 가진 비교적 간단하고 흔한 영어 단어인데다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점, 주택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연립주택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상업용 건물건축업, 사무용 건물건축업 등을 지정서비스업



[그림 2]

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보면 ‘주거 환경이 쾌적하여 천국과 같다’거나,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건물’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워 식별력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는 1968.경부터 ‘SKY’ 라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다양한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에 등록하여 선점한 뒤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등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사용권을 설정하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SKY’ 라는 표장이 오랜 동안 국내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사용되어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하나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 사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인 2001. 10. 무렵에는 아파트 등에 이름을 붙임에 있어, 시공업체의 명칭을 주로 사용하던 종래의 관행을 버리고 ‘래미안’, ‘e-편한세상’ 등과 같이 건물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Sky’ 라는 표장은 주택 건설업 등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서비스표로서의 독립된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스카이’ 만으로 약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중요부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속하는 서비스업류 제37류는 물론, 이와 류를 달리하는 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에 이미 ‘sky’ 를 포함한 표장이 피고 이외의 자에 의하여 다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출원되거나 등록되어 있으므로 ‘sky’ 는 거래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시점인 2001. 10. 당시 ‘Sky’ 라는 단어의 식별력이 미약해질 정도로 ‘Sky’ 를 포함하는 상표나 서비스표가 피고 이외의 자에 의하여 다수 등록 출원되거나 등록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표나 서비스표 상당수는 2002. 이후에 출원 또는 등록된 것들이고, 특히 서비스업류 제37류를 지정서비스로 한 서비스표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출원되거나 등록된 것은 3개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전국 각지에 시공된 아파트 등의 이름에 ‘스카이’ 또는 ‘sky’가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어 피고의 서비스업을 표상하는 식별력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시점인 2001. 10. 당시 서울, 인천, 광주, 대구, 태백시 등에 소재한 아파트, 호텔, 맨션 등의 이름 중 ‘sky’ 또는 ‘스카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들이 총 16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택 건설업 등과 관련하여 ‘sky’라는 표장이 식별력이 없어질 정도로 주택의 명칭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Sky’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시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나 선등록서비스표에 있어 모두 식별력이 있으므로, 대비의 대상이 되는 중요부분이라 할 것이다.

사례3)

- 이 사건 출원상표 : DISH DOCTOR
- 선등록상표 : DOCTOR
- 관련판결요지(2004허5986)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DISH DOCTOR”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DOCTOR”와 같이 구성된 상표로서, “DISH”는 ‘접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지정상품인 “전지작동식 휴대용 전기접시담개솔, 전지작동식 휴대용 전기접시담개솔용 교체패드”의 용도 또는 사용대상 등을 직접 표시하는 부분이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나머지 “DOCTOR” 부분이 요부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DOCTOR” 부분은 지정상품의 효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의미를 직감케 할 뿐만 아니라 “DOCTOR” 또는 “Dr”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이미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식별력이 매우 약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DISH” 부분 역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전체로서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DOCTOR”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의사, 박사, 진료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이 어떤 대상물을 진단·치료·수리·교정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접시뚜개에 필요한 솔 및 교체패드로서 단순히 접시를 ‘세척’ 하는데 사용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접시의 수리·교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DOCTOR” 부분이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미 “DOCTOR”를 포함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표장 및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 있어서도 그 식별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례4)

- 이 사건 등록상표: 장수온돌
- 선등록상표: [그림 23]
- 관련판결요지(2004허126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장수온돌”과 같이 한글 4자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전기침대와 관련하여 볼 때 “온돌” 부분은 지정상품의 품질과 재료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으로써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요부는 “장수” 부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었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각 부분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고, “옥돌”은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 상표는 한글 “장수”만으로 약칭 및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그림 2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및 비교상표의 “장수”는 “長

壽, 商人”의 뜻을 가짐으로 지정상품의 효능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서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여 이 부분을 비교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국어사전에는 “장수”가 ‘장사를 하는 사람’, ‘전라북도 장수(長
水)군의 군청소재지’, ‘오래도록 삶(長壽)’, ‘군사를 거느리고 지휘하
는 우두머리(將帥)’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의미는 그 낱말이 쓰이는 상황 내지 문맥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상표의 “장수”가
“長壽(장수, 목숨이 김, 오래 삼)” 또는 “商人”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바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 상표의 “장수”가 “長壽”의 의미로
인식되어 “장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의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가정용 전열기구 또는 용품으로서 기본적으
로 장수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수면 또는 휴
식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이므로, 위와 같은 의미는 그 지정
상품의 효능 등의 성질을 어느 정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
고 그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장수”가 기술적 표
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장수”라는 용어를 포함하는 상표가 “흑장수”, “옥장
수” 등 이 사건 등록상표 및 비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
품 뿐만 아니라 술과 같은 다른 상품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거나 등
록 또는 출원공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장수”라는 용어는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상이 되는 상표들을 개별적
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상표의 등록, 출원 공고
또는 사용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를 포함하는 상표가 같거나 다른 상품에 일부 등록되어 있다
고 하여 곧바로 그 부분의 식별력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
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장수”라는 용어는 다양한 상품에 널리 쓰일 뿐만 아
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용어로서 특정인에게 독점시

키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장수”라는 용어가 포함된 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 및 비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다른 상표들에 관하여 사용되거나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장수”라는 용어가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로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만으로는 “장수”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표장들이 사용된 것이 위 용어만으로 구성된 비교상표가 등록되기 이전부터인지 아니면 비교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어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자 다른 사람들이 이에 편승하여 위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를 사용하게 된 것인지를 알 수도 없고, 달리 “장수”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호에 계속

발·특2006, 5 |